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0년 12월 7일

나. 회부일자 : 2000년 12월 11일

3. 제안이유

가.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자치단체간의 정보공유 확대와 공동사업의 추진등 시대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종합적·체계적인 지역정보화 협의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나. 시·도간 협의를 거쳐 지역정보화협의회를 구성, 자치단체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분산투자를 최소화하여 정보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과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도모

4. 주요골자

가. 명칭은 “지역정보화협의회”로 하고, 사무소는 자치정보화지원 재단에 둔다(제1조, 제3조)

나. 목적은 시·도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협력을 통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 지역간 균형 발전에 기여 (제2조)

다. 시·도 지역정보화 협의회 구성(제4조, 제5조, 제6조)

- 협의회 구성은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로 구성
- 협의회 위원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책임관(CIO) 또는 정보화 관련 실국장으로 조직
-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및 관계 전문가로 위촉

라. 지역정보화 협의회 주요기능(제9조)

-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 공동S/W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개발 우수S/W 확산보급 및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 ASP(공동서비스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 자치단체간 지역정보화 정보교류 및 정부에 대한 개선·건의 등

마. 회의운영(제10조, 제11조)

-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
-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
- 상정안건이 2회 이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조정 요청

바. 사무위탁 및 비용부담 (제13조, 제14조)

- 협의회는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협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정보화지원재단에 사무위탁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소요비용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자치단체 부담분은 수혜의 정도를 고려하여 협의회 결정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검토의견

지역정보화협의회 규약안을 검토한 바

이는 자치단체간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화사업의 중복 및 분산투자를 방지하고 정보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사업 추진등 지식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정보화 협의회를 구성하고자 의회에 의결 안건으로 제출되었음.

규약안의 주요내용은

- 사무소는 자치정보화 지원 재단에 두고
- 각 시도의 정보화책임관 또는 정보화 관련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며
- 비용부담은 수혜의 정도에 따라 협의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음.
- 협의회는 주요기능은
 - 지역정보화 중장기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방안
 - 자치단체 공통S/W 개발 및 유지·보수
 - 자치단체 개발 우수S/W 확산보급 및 공동활용 방안
 - 하드웨어 공동구매 및 공동활용 방안
 - 공동서비스센터(ASP) 사업
 - 정부에 대한 지역정보화 정책 개선 및 건의사항 등이며
- 회의 개최는 상·하반기 연 2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입니다.

본 규약안은 각 시도가 협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충청북도의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도에 제정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의해 구성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촉진 협의회 운영도 미진한 상태로 협의회 구성후에 성과가 있도록 운영을 잘하는 것이 과제라 하겠음.

※ 붙임 : 지역정보화협의회규약(안)